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219호
- 발의자 : 김경훈 의원 등 25명
- 발의일자 : 2025. 10. 20.
- 회부일자 : 2025. 10. 23.

II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 조례에서 규정된 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23조제1항).
- “물품출납사무의 검사”를 “물품관리 검사” 등으로 변경함(안 제27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예고(2025. 10. 28. ~ 11. 1.)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김경훈 의원 등 25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3219호로 공동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제목과 개별 조항에서 사용하는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하여 법령 간의 체계적합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안 제23조제1항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소관 물품의 훼손 등으로 물품보관자에게 변상책임을 명하는 근거와 방법, 절차 등을 정함에 있어 인용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7조를 현행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조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8조가 2021년 4월 20일 일부개정으로 제60조로 이동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가 이듬해인 2022년 4월 20일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1] 개정안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당초 규정	개정 규정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의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p> <p>(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p> <p>(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7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 3.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가격, 감가 정도, 내용연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대통령령 제21447호, 2009. 4. 24, 일부개정)</p>	<p>< 삭 제 ></p> <p>(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p>

- 동 조문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조문 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된 2021년과 2022년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추진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즉각 반영 되도록 법제 사무 추진에 주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27조는 조문의 제목을 “물품출납사무의 검사”에서 “물품관리 검사”로, 조문 내용 중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를 “물품관리검사”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 동 조문 역시 2022년 4월 20일 일부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법 제90조에 따라 시행하는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물품관리검사”로 약칭함에 따라 조문 내용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리하려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표-2] 개정안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 개정사항

당초 규정 (대통령령 제21447호, 2009. 4. 24, 일부개정)	개정 규정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p>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 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u>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u>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 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물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p>	<p>제90조(물품관리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u>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를</u> 하게 해야 한다.</p> <p>② 물품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p> <p>③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물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p>

당초 규정 (대통령령 제21447호, 2009. 4. 24, 일부개정)	개정 규정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 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u>검사를</u> 하게 할 수 있다.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 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u>물품관리검사를</u> 하게 할 수 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인용조문 정비 등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어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¹⁾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	----------------	-------	----------------

1)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

관 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0조(물품관리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관리를 검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8호, 2025. 9. 2., 일부개정]

- 제90조(물품관리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를 하게 해야 한다.
- ② 물품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 ③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물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